

---

#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

2018. 1. 10.

I. SEOUL.U

나와 너의 서울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8.1.10(수) 10:00~12:00
- 장 소 :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대 상 : '18년 재정지원사업 공모 지원 준비하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 담당 직원
- 내 용 : '18년 관련 지침 사항 설명, 공모 지원 준비 방법 안내 등

**세부일정**

연번	시 간		강 의	강 사	비고
1	10:00~10:10	10'	교육개요 소개	이성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4	10:10~11:40	90'	'18년도 재정지원사업 설명	박향희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5	11:40~12:00	20'	질의 답변		

※ 사전 신청 / 등록 불필요 (참석 의무 사항 아님)

※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증을 제공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목 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 1p
2. 2018년도 지침 변경 사항 및 공모 준비 ----- 11p
3. 2018년도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개정내용 및 신구대비표 ----- 21p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18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함

##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 '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10년부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속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게 됨

\*'10년 사업개발비, '11년 일자리창출사업, '12년 전문인력 지원사업 '16년 사회보험료

### 사업목표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채용인력에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활성화 도모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구축
-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지원

### 사업예산: 11,786백만원(국비 8,566백만원/시비 3,220백만원)

## 2

## '17년 추진실적

### 재정지원사업 지원 실적

- 지원실적 : 총 11,444백만원 지원 (교부율 99.8%)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인증			예비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합 계	507	2,027	11,444	299	1,719	7,128	208	308	4,316
일자리창출	269	803	7,990	128	495	4,837	141	308	3,153
사업개발비	104	-	2,084	37	-	921	67	-	1,163
사회보험료	134	1,224	1,370	134	1,224	1,370	-	-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13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총 456백만원 지원 ※장터운영 1개 자치구 40백만원, 지역특화 모델 발굴 : 3개 자치구 100백만원, 지역 지원 연계 지원: 1개 자치구 40백만원, 기타 사회적기업 빌굴 육성: 8개 자치구 276백만원								

## 3

## '18년 주요 변경내용

### 일자리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자도 2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p 추가지원
- 취약계층에 20%p 추가지원
- 재심사 요건, 목표매출액 기준을 70%에서 50%로 완화해 안정적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의무사용

###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기준에 기업(조합)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신설

### 지역특화사업

#### 지역특화사업 내용 확대

\* (사업보고서 분석 등)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업무, 퇴직전문인력 활용한 사회서비스제공사업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 참여 (심사위원, 진흥원이 1명 추천)

##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강화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 전체기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확대
- 부정수급 확정시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형사고발

## **4 세부 추진계획**

### **1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1,724천원/월, 기업당 1인이상 50인이하
  - 연차별 지원비율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일반 근로자	70%	60%	60%+20%*	50%+20%*	30%+20%*
취약계층 근로자	90%	80%	80%+20%*	70%+20%*	50%+20%*

\* 2년이상 계속 고용한 참여근로자, 20% 추가지원

- 예산액 : 7,621백만원(국비 5,716백만원, 시비 1,905백만원)
  -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신규 및 재심사 공모·선정 (5~7월)
  - 신규, '17년 2년차 · '16년 3년차 · '15년 4년차 · '14년 5년차

##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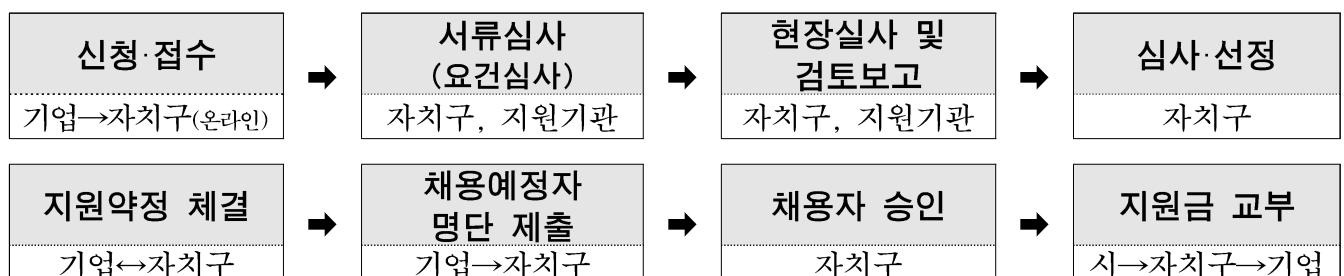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3인(유급근로자수 50인 미만은 2인)  
예비사회적기업 1인  
※ 단,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월 200~250만원 한도  
- 연차별 지원비율

- ▶ 인증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 예비 : 1년차 90%, 2년차 80%

- 예산액 : 별도 예산 없이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활용  
※ 국비 75%, 시비 25%

### □ 추진일정

- 지원절차



- 자치구 상시접수 체계 추진(자치구 수시접수)

### □ 심사기준

- 신규지원의 경우 지원필요성, 사용분야 및 인원의 적절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
- 재심사 지원의 경우 기 지원 인원의 효과성, 향후활용계획 등 검토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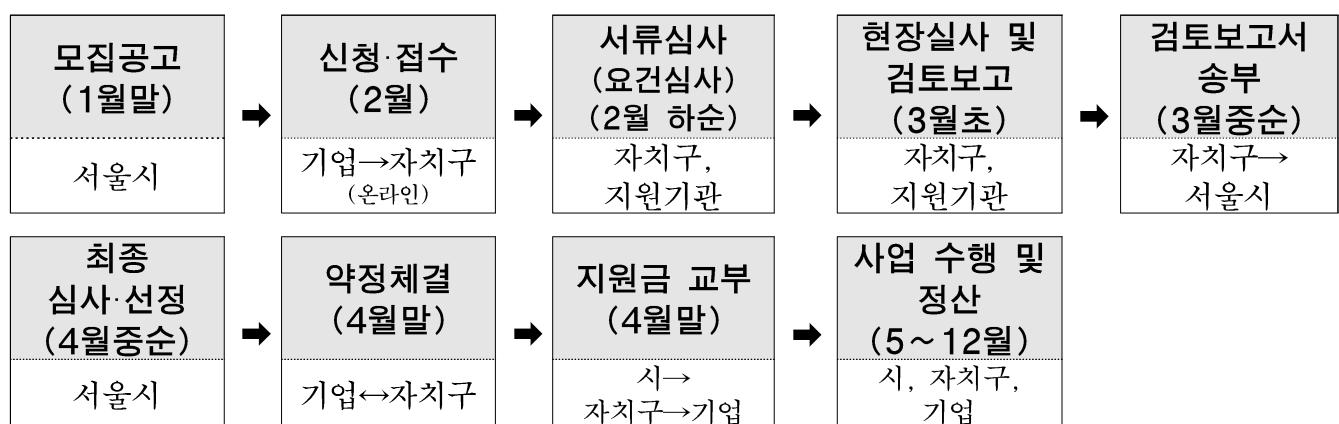
###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한도 : 인증 1억원, 예비·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10~30%(부가세 제외)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
- 사용용도 :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 등
- 예산액 : 2,493백만원(국비 1,680백만원, 시비 813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 추진일정

- 신규 공모 · 선정 : '18년 신규(2~4월)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절차



#### □ 추진성과(목표)

- 지원목표 : 130개 기업(예정)
-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셜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통한 기업의 규모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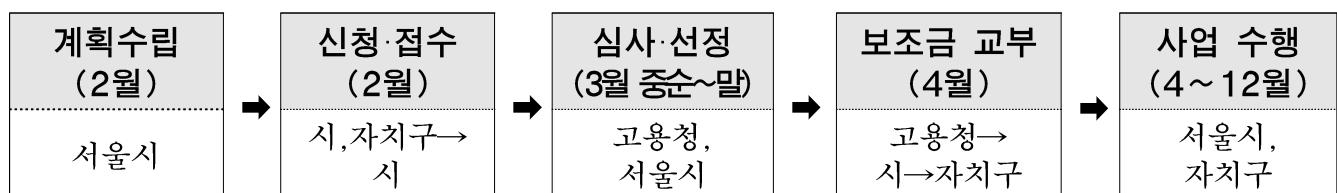
## 4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직접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 사업내용
  - 모델 개발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등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등
  - 홍보 :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등
  - 판로개척 :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기타 :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
- 예산액 : 418백만원(국비 292백만원, 시비 126백만원)
  - ※ 국비 70% 시비 30%

### □ 추진일정

- 접수 · 선정 : '18년 신규(1~3월)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선정 절차



### □ 추진성과(목표)

- 자치구 16개 사업 선정·지원(예정)
- 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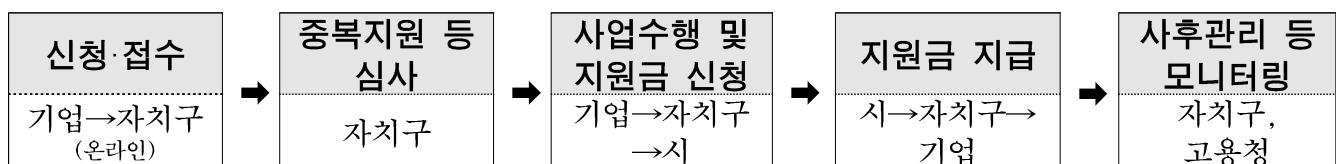
## 5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 50명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지원수준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51.080원
- 예산액 : 1,254백만원(국비 878백만원, 시비 376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 추진일정

- 자치구 상시접수 체계 추진(자치구 수시접수 및 선정)
- 사회보험료 선정 절차



## 5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으로 사업의 적정한 운영
- 점검종류
  - 정기점검 : 자치구, 매분기 1회 점검(사업참여기업 25%이상)
  - 특별점검 : 부정수급제보, 취약분야 점검 등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지방노동관서 합동점검(반기1회)
- 상시모니터링
  - 재정지원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

## 5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요건

-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인사 등) 10인으로 구성

사업명	구성방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 민간전문가 4인 이상</li></ul>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li><li>(민간전문가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해야하고, 2인은 타 시·도에 거주할 것)</li></ul>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심사위원의 1/3이상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1명이상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 포함)</li></ul>

###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으로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심사위원 Pool을 분야별(사회적경제, 경영, 노무, 법률, 회계등)로 구성
- 심사위원 임기 2년, 심사 공정성 확보 (18년 지침 시행일 기준)
- 심사시 현장실사등을 수행한 자치구 및 고용청, 지원기관 직원을 참여토록 하여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
- 경영(마케팅), 문화(교육), 기술개발(R&D) 분야등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

## 6

## 기타사항

-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의거 추진
- 기타 업무매뉴얼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사업 추진별도 수립

### 2018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1.10.(수), 10:00 ~ 12:00
- 장 소 : 장교빌딩 5층 컨벤션룸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63)
- 대 상 : 재정지원사업 지원 준비기업, 자치구 담당 직원
- 내 용 : 지침 개정사항 설명, 공모 지원 준비방법 안내 등

# **2018년도 지침 변경 사항 및 공모 준비**





##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안내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박향희  
2018.1.1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인증

지역형예비

부처형예비

재정지원  
(직접지원)

경영컨설팅  
(간접지원)

고용노동부(제도, 지침, 예산배정)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광역지자체

각 부처

광역지자체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기초지자체

지원기관

기초지자체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기간



신<sup>시</sup>도<sup>교</sup>나<sup>라</sup>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 사회보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200만원/250만원한도 (인증 최대3명, 예비 1명)</li> <li>▪ 자부담 예비 10/20% 인증 20/30/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연 1억원 한도</li> <li>▪ 예비: 연 5천만 한도</li> <li>* 자부담 10/20/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부담사회보험료</li> <li>▪ 지원한도 50명</li> <li>* 인증기업만 해당</li> </ul>
약정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기간	(지정) 지정기간 내 2년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내 3년(보험료지원 4년)			
지원기간 산정방법	<p>(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p>	<p>(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p>	<p>(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b>(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b>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p>	<p>(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p>

3

## ☞ 재정지원사업 최대지원기간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 지원기간	<p>(예비) 지정기간 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p>	
지원기간 가산방법	<p>(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p>	<p>(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p>

### • 최초 지원개시일 (인증의 경우)

-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 중 가장 먼저 지급 개시된 날짜를 말함

\* 예시) A기업이 아래와 같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일자리 창출 : '1661 / 전문인력 '1681 / 사업개발비 '16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1661임

→ 최대지원기간 마감일은 '21530일임

→ '21530까지 최대지원기간(3년 또는 4년)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장되지 않음

4

# 재정지원사업 1\_ 일자리창출사업

신<sup>한</sup>마을조합

## 사업내용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금 사회보험료의 일부(9.6%)

(지원비율)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 1년차 60%\*20%, 2년차 50%+20%, 3년차 30%+20%

\*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취약계층 지원비율)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1년차 80%+20%, 2년차 70%+20%, 3년차 50%+20%

\*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금 예시)

\*산정방법: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573,77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6%(151,080원)=1,724,85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85%

\*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기준(지원기간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시 1년차 지원금 :  $1,724,850\text{원} \times 90\% = 1,552,360\text{원}$

•

(참여근로자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단, 일자리제공형만 50% 이상)

5

# 재정지원사업 1\_ 일자리창출사업

신<sup>한</sup>마을조합

## 참여제외 대상 기업

###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인 (예비)사회적기업 이외의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있어야 함
- 단, 특정취약계층 (중증장애인)을 총근로자의 2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회서비스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단, 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하는 기업

###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 등의 경우는 제외

### ✓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등

6

# 재정지원사업 1\_ 일자리창출사업

신<sup>시</sup>창<sup>창</sup>나<sup>나</sup>

## 참여근로자 모집 및 선발

### ✓ 참여 제한자의 범위

-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7

# 재정지원사업 1\_ 일자리창출사업

신<sup>시</sup>창<sup>창</sup>나<sup>나</sup>

## 심사기준 및 배점

### ✓ 심사기준 및 배점

- 사업내용의 우수성(30)
- 사업주체의 견실성(20)
-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40)
- 훈련계획의 충실성(10)

###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중점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사회적기업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지속가능성

### ✓ 일자리제공형 유의사항

-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감안하여 아래 순위로 선정
- 사회서비스제공실적이 사업공고일 직전 1년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우 사업공고일 직전 1년간 매출액 대비 5%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 그 외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8

# 재정지원사업 1\_ 일자리창출사업

신<sup>시</sup>도<sup>도</sup>교<sup>교</sup>나<sup>나</sup>라<sup>라</sup>

## 기타 주요사항

### 고용 조정 또는 고용 유지조치 기업 참여 제한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적용

### 지원대상

- 1일 3~8시간 근로자

###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선지급 후정산→ 임금지급 확인 후 지원)

### 참여제외 대상기업 신설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제한

###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지원금 산정방법

-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단가-(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주부담금)을 지원

9

# 재정지원사업 2\_ 전문인력

신<sup>시</sup>도<sup>도</sup>교<sup>교</sup>나<sup>나</sup>라<sup>라</sup>

## 사업내용

- (지원내용)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또는 250만원 한도**  
(지원인원) 사회적기업 2명 (유급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자부담 비율)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 2년차 20%  
사회적기업 :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유의사항

- ✓ 고령자 채용할 경우 1인 추가 지원  
- 지원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추가 지원  
\* 이미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는 고령자가 아닌 전문인력도 가능(1591신규채용자부터 적용)  
\*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고령자를 채용해야 1인 추가 지원함

✓ 기 지원받은 분야 또는 기 지원받은 전문인력 지원 불가 (아래 그림 예시 참고)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예비 3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인증 4년차	인증 5년차	인증 6년차	인증 7년차
영업분야 (자부담)	○ (10%)	○ (20%)		-	● (20%)	○ (30%)	○ (50%)			-
IT분야 (자부담)		○ (10%)	○ (20%)	-		○ (20%)		○ (30%)	● (50%)	-
교육분야 (자부담)	-	-	-	-				○ (20%)	● (30%)	-
법무분야 (자부담)	-	-	-	-					● (20%)	-

\* ○: 지원받은 연도 ●: 인증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 ●: 인증 사회적기업 최대 지원기간 종료일

10

# 재정지원사업 3\_ 사업개발비



## 사업내용

(연간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 단,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총 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 내 최대 지원금액 3억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유의사항

###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등
- 수익모델과 직접 관련없는 시스템 구축
- 유형의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리스의 경우 자부담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 기간 이내 지원가능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기초컨설팅
- 각종 세금, 교육훈련비 등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11

# 재정지원사업 3\_ 사업개발비



## 기타 주요사항

사업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진흥원 '전문컨설팅, 판로지원'에서 사업개발비 연계 필요의견 제시되면 우대

2회차 심사 시부터 전 회차 사업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 심사 시 반영

- 2회차 심사부터 감점 적용

시제품 개발에 소용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의 20%로 한정

12

# 재정지원사업 4\_ 사회보험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인증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단,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 고용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신청 가능
- (지원수준)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현재 9.6%,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51,080원  
월 중도 입퇴사자 지원은 제외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취득된 경우는 고용보험 제외하고 지원

## 유의사항

- ✓ 인증 받은 월부터 지원 가능
- ✓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 지원한도 50명 ('16.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16년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이관
- ✓ 매월 15일까지 신청, 10일 이내 지급



# **2018년도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개정내용 및 신구대비표**



# 2018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 I 일자리창출사업

###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인센티브 확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자도 2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p 추가 지원
- (자율성 확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업비 교부액의 20% 한도 내에서 자율 추진
- (재심사 요건 완화) 목표 매출액을 50%로 완화하여 안정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심사공정성 확보) 심사위원 임기(2년) 및 제척사유를 명확히 하여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명시

## II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 공모사업

-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없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조합)
- (중복지원 방지) 기초지자체의 신청서 접수 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법인등록번호를 관리정보에 추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장 확인
- 지원 기준에 기업(조합)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신설

- 기초지자체 검토보고서 작성 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검토항목 신설
- 광역지자체 신청 기업(조합)에 대한 심사 시 심사기준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20점)항목 추가
  - \* 사업계획 적정성(40), 신청금액 적정성(20), 사업수행능력(20), 사회적 가치(20)

## □ 지역특화사업

### ○ 특화사업 내용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검토 및 분석 등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업무
-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청소년 상담 서비스 등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 참여

- 지역특화 지원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진흥원 사업 연계 및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진흥원이 추천한 1명 참여

## III 사후관리 분야

## □ 사회적기업 관리

- (상시모니터링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 전체 기간으로 모니터링 확대
- (부정수급 고발기준 강화)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 고발하여 심리적 부정수급 예방

#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input type="checkbox"/> 0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b>224쪽 1-2 참여제외 대상</b>		
<b>1-2 참여제외 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u>참여중이거나 이미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가능)</u></li> </ul> <p><u>&lt;신 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u>참여 중인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가능)</u></li> <li>○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다만, 노숙인, 알콜중독자 등 극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가치수준’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극 취업애로계층에 한하여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지원기간·지원비율 등을 달리할 수 있음)</li> <li>-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되, 공정성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과-3744(‘17.9.16)</li> </ul> </li> <li>○ 사회적가치 수준에 대한 평가 주체, 공정성 담보방안, 극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평가방식 등 구체화</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위하여 진홍원 또는 권역별 지원기관에 평가 의뢰 가능(재정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 의뢰)</p> <p>-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p>	
226쪽 2-3 사업신청서 제출		
<p>2-3 사업신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u></li> </ul> <p>&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u></li> <li>- <u>서면접수시 차기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u></li> <li>- <u>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과정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시스템 의무사용(내용 추가)</li> </ul>
<p>구비서류</p> <p>④ <u>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u></p> <p>⑧ <u>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u></p>	<p>구비서류</p> <p>④ <u>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u></p> <p>⑧ <u>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대장 등 필요사항 반영</li> <li>○ 오류수정</li> </ul>
228쪽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3-1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input checked="" type="radio"/> 광역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input checked="" type="radi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여 심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 사회적기업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지방 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을 반드시 포함</li> </ul> <p><u>&lt;신 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u>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다만, 기존 위원의 임기는 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을 적용)</u></li> <li>- <u>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의 심의에서 제척</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의 당사자가 된 경우</u></li> <li>• <u>위원이 당해 심의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li> <li>• <u>위원이 당해 심의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li> </ul> </li> <li>- <u>재정지원을 신청한 자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함</u></li> <li>- <u>위원은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규정을 준용</li> </ul>
<p><u>&lt;신 설&gt;</u></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u>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음</u>	
229쪽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p>3-2 심사 및 선정방법</p> <p>○ (지원인원 배정) “1인 이상 50인 이하” 를 원칙으로 함</p> <p><u>&lt;신 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인원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li> <li>-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 청년 다수 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 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li> </ul> <p><u>&lt;신 설&gt;</u></p>	<p>- <u>지원한도 인원을 감축하여 모집공고 하거나, 사업 설명회 등 사업안내시 임의로 지원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u></p> <p>“좌동”</p> <p>“좌동”</p> <p>- <u>사전에 배정가능한 총 인원*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기업이 신청한 인원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u></p> <p>* ex) 배정가능 총 인원 120명(1일8시간 근로 형태 기준)</p> <p>* <u>최근 지원비율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책임성이 제고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 신청인원 감원조정 지양</u></p>	<p>○ 지침 반영</p> <p>- 사회적기업과-3744(‘17.9.16)</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신설>	<p>4-2-4 지원인원의 조정</p> <p>○(고용지원)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기업이 배정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서와 협조하여 참여기업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적극 참여근로자 모집 지원</p> <p>○(모니터링) 참여근로자 모집기간 3개월 후 또는 재심사 지원개시 1개월 후,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기업 배정인원 채용현황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결과 배정인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추가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추가배정 한도: 심사를 통해 배정받은 인원의 50%</u></li> </ul> </li> <li>- 또는,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해 배정인원이 남는 기업의 인원을 감원하여 필요한 기업에 추가 배정</li> <li>- 관내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 배정인원 추가 요청</li> <li>-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배정인원이 남는 지역의 인원을 추가수요 지역에 재배정</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인원증원) <u>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배정인원 증원 신청[별지 제15호 서식]</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역별지원기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증원여부 결정</u></li> <li>- <u>기초자치단체장은 권역별지원기관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역별 지원기관은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 제출[별지 제16호 서식]</u></li> </ul> <p>○(인원감원) <u>모니터링 결과 목표인원을 못 채운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고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원 할 수 있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감원조정은 배정인원 추가 수요가 있으나 예산의 여유가 없는 등 추가 배정을 위해 감원조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실시</u></li> <li>* <u>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배정인원의 50%를 미채용하여 약정해지 되는 기업에 대해 배정인원의 50%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인원을 감원하는 것은 불가</u></li> <li>- <u>기초자치단체장은 권역별지원기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감원여부 결정</u></li> <li>- <u>기초자치단체장은 권역별지원기관에 감원</u></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역별 지원기관은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 제출[별지 제16호 서식]</p>	
238쪽 5.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5-2. 참여제한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li> <li>① ~ ④ 생략</li> </ul>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li> </ul>	<p>⑤ <u>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u></p> <p>⑥ <u>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했던 근로자로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광역자치단체에서 ‘VI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계획’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인정할 경우</u></li> </ul> <p>○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회시 반영 *사회적기업과-2700(' 17.6.20.)</li> <li>○ 지역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기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내용 상세설명</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p> <p>○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p> <p>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p> <p><u>&lt;추 가&gt;</u></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실질적 사용자·업태·인사(채용·급여지급 등)·노무관리(출퇴근 관리·업무지시·근태관리·근로계약서 작성 등)·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이윤 배분 등)·모범인 여부·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u></li> </ul> <p>○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p> <p>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u></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241쪽 5-4 참여근로자 확정 승인		
<p>○ (자체고용근로자 우선채용) 지원기간 중 사업 참여기업의 자체고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자체고용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자체고용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추가 확정·승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고용근로자수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li> </ul> <p>* 예시: 배정인원이 10명인 사업참여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2명의 자체고용근로자가 -----</p>	<p>○ (기존근로자 퇴사) 지원기간 중 사업참여기업의 기존근로자(비참여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기존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퇴직한 기존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확정·승인 가능</li> <li>- 기존근로자수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li> </ul> <p>* 예시: 배정인원이 10명인 사업참여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2명의 기존근로자가 -----</p>	○ 지침 내용 명확화
248쪽 6-3 수입금 관리		
<p>○ 매출액사용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기업은 지원중단 또는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사용내역(재무제표등) 및 이익금(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향후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li> </ul>	<p>○ 매출액사용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기업은 지원중단 또는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사용내역(재무제표등) 및 이익금(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향후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별지 제14호서식]</li> </ul>	○ 제출양식 안내
251쪽 IV 주요사업내용		
<p>▶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p>	<p>▶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p>	○ 지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과-3744(‘17.9.16)</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li> <li>- 사회적기업: <u>1년차 60%, 2년차 50%</u> <u>3년차 30%+20%(계속고용시)</u></li> </ul>	<p><u>&lt;일반근로자&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li> <li>- 사회적기업: <u>1년차 60%+20%(계속고용시)</u> <u>2년차 50%+20%(계속고용시)</u> <u>3년차 30%+20%(계속고용시)</u></li> </ul>	
<신 설>	<p><u>&lt;취약계층 근로자&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u>1년차 90%, 2년차 80%</u></li> <li>- 사회적기업: <u>1년차 80%+20%(계속고용시)</u> <u>2년차 70%+20%(계속고용시)</u> <u>3년차 50%+20%(계속고용시)</u></li> </ul>	
253쪽 2. 지원금 지급 수준 및 산정방법		
2-1 지급내용 및 지급 수준		
<input type="radio"/>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u>1년차 70%, 2년차 60%</u></li> </ul>	<p>“좌동”</p> <p><u>&lt;일반근로자&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u>1년차 70%, 2년차 60%</u></li> </ul>	<input type="radio"/> 지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과-3744(‘17.9.16)</li> </ul> <input type="radio"/>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계속지원시 추가 지원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 사회적기업:  <u>1년차 60%, 2년차 50%</u>  <u>3년차 30%+20%(계속고용시)</u></p>	<p>- 사회적기업:  <u>1년차 60%+20%(계속고용시*)</u>  <u>2년차 50%+20%(계속고용시**)</u>  <u>3년차 30%+20%(계속고용시***)</u></p> <p>&lt;취약계층 근로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u>1년차 90%, 2년차 80%</u></li> <li>- 사회적기업:  <u>1년차 80%+20%(계속고용시)</u>  <u>2년차 70%+20%(계속고용시)</u>  <u>3년차 50%+20%(계속고용시)</u></li> </ul>	<p>*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에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p> <p>* 1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60%이나, 계속 고용 인원은 80%(6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p> <p>- 계속 고용이란, 예비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1년 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p> <p>** 2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50%이나, 계속 고용 인원은 70%(5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p> <p>- 계속 고용이란, 예비지원 2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2년 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p> <p>***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u>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 고용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3년 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li> </ul> <p>※ 계속고용 판단은 채용 후 3년차 이후에도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p>	
254쪽	<p>○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 수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 중에서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이하 ‘저소득층’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다.</p> <p><u>저소득층 지원비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u>1년차 80%, 2년차 70%</u></li> <li>- 사회적기업: <u>1년차 70%, 2년차 60%</u> <u>3년차 40%+20%(계속고용시)</u></li> <li>- 시행일: 2016.11.1.</li> <li>- 적용: 이미 약정이 체결되어 지원중인 참여근로자 중 ‘저소득층’도 2016.1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li> </ul> <p><u>취약계층 지원비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u>1년차 90%, 2년차 80%</u></li> <li>- 사회적기업: <u>1년차 80%+20%(계속고용시)</u> <u>2년차 70%+20%(계속고용시)</u> <u>3년차 50%+20%(계속고용시)</u></li> <li>- 삭제</li> <li>- 삭제</li> </ul>	<p>○ 지침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과-3744(‘17.9.16)</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b>255쪽</b>															
<u>산정 예시-일반취약계층</u>							<u>산정 예시-일반근로자</u>								
<u>산정 예시-일반취약계층</u>							<u>산정 예시-일반근로자</u>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70%	60%	60%	50%	30% (30%+20%)		100%	70%	60%	60% (60%+20%)	50% (50%+20%)	30% (30%+20%)		
1일 8시간	1,478,790	1,035,150	887,270	887,270	739,390	443,630 (739,390)	1일 8시간	1,724,850	1,207,390	1,034,910	1,034,910 (1,379,880)	862,420 (1,207,390)	517,450 (862,420)		
1일 7시간	1,294,830	906,380	776,890	776,890	647,410	388,440 (647,410)	1일 7시간	1,510,270	1,057,180	906,160	906,160 (1,208,210)	755,130 (1,057,180)	453,080 (755,130)		
1일 6시간	1,110,860	777,600	666,510	666,510	555,430	333,250 (555,430)	1일 6시간	1,295,700	906,990	777,420	777,420 (1,036,560)	647,850 (906,990)	388,710 (647,850)		
1일 5시간	919,820	643,870	551,890	551,890	459,910	275,940 (459,910)	1일 5시간	1,072,870	751,000	643,720	643,720 (858,290)	536,430 (751,000)	321,860 (536,430)		
1일 4시간	735,860	515,100	441,510	441,510	367,930	220,750 (367,930)	1일 4시간	858,290	600,800	514,970	514,970 (686,630)	429,140 (600,800)	257,480 (429,140)		
1일 3시간	551,890	386,320	331,130	331,130	275,940	165,560 (275,940)	1일 3시간	643,720	450,600	386,230	386,230 (514,970)	321,860 (450,600)	193,110 (321,860)		
<p>* 산정방법: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352,23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협료 9.36%(126,560원) = 1,478,790원</p> <p>* 사회보협료 산정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6%,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7%</p> <p>*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기준(지원기간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p> <p>* 최저임금 일급: 8시간기준 51,760원, 6시간기준 38,820원, 4시간기준 25,880원</p> <p>* 원 단위 절사</p> <p>* 단, 일부보험료만 지원되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사회보협료를 계산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곱한 후 정액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p> <p>* 예시: 예비1년차 기업 참여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수령하며 국민연금이 적용제외인 근로자 1,035,150원(예비1년차) - [60,850원(1,352,230×4.5%)×0.7] = 992,554원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p> <p>* 산정방법: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573,77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협료 9.6%(151,080원) = 1,724,850원</p> <p>* 사회보협료 산정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85%</p> <p>*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기준(지원기간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p> <p>* 최저임금 일급: 8시간기준 60,240원, 6시간기준 45,180원, 4시간기준 30,120원</p> <p>* 원 단위 절사</p> <p>* 단, 일부보험료만 지원되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사회보협료를 계산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곱한 후 정액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p> <p>* 예시: 예비1년차 기업 참여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수령하며 국민연금이 적용제외인 근로자 1,207,390원(예비1년차) - [70,810원(1,573,770×4.5%)×0.7] = 1,157,830원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u>산정 예시-저소득층</u> <u>&lt;신 설&gt;</u>	<u>&lt;삭 제&gt;</u> <u>산정 예시-취약계층</u> <u>산정 예시-취약계층</u>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차별 지원비율</th><th>기준단가</th><th>예비 1년차</th><th>예비 2년차</th><th>인증 1년차</th><th>인증 2년차</th><th>인증 3년차</th></tr> </thead> <tbody> <tr> <td>100%</td><td>90%</td><td>80%</td><td>80% (80%+20%)</td><td>70% (70%+20%)</td><td>50% (50%+20%)</td><td></td></tr> <tr> <td>1일 8시간</td><td>1,724,850</td><td>1,552,360</td><td>1,379,880 (1,724,850)</td><td>1,207,390 (1,552,360)</td><td>862,420 (1,207,390)</td><td></td></tr> <tr> <td>1일 7시간</td><td>1,510,270</td><td>1,359,240</td><td>1,208,210 (1,510,270)</td><td>1,057,180 (1,359,240)</td><td>755,130 (1,057,180)</td><td></td></tr> <tr> <td>1일 6시간</td><td>1,295,700</td><td>1,166,130</td><td>1,036,560 (1,295,700)</td><td>906,990 (1,166,130)</td><td>647,850 (906,990)</td><td></td></tr> <tr> <td>1일 5시간</td><td>1,072,870</td><td>965,580</td><td>858,290 (1,072,870)</td><td>751,000 (965,580)</td><td>536,430 (751,000)</td><td></td></tr> <tr> <td>1일 4시간</td><td>858,290</td><td>772,460</td><td>686,630 (858,290)</td><td>600,800 (772,460)</td><td>429,140 (600,800)</td><td></td></tr> <tr> <td>1일 3시간</td><td>643,720</td><td>579,340</td><td>514,970 (643,720)</td><td>450,600 (579,340)</td><td>321,860 (450,600)</td><td></td></tr> </tbody> </table>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90%	80%	80% (80%+20%)	70% (70%+20%)	50% (50%+20%)		1일 8시간	1,724,850	1,552,360	1,379,880 (1,724,850)	1,207,390 (1,552,360)	862,420 (1,207,390)		1일 7시간	1,510,270	1,359,240	1,208,210 (1,510,270)	1,057,180 (1,359,240)	755,130 (1,057,180)		1일 6시간	1,295,700	1,166,130	1,036,560 (1,295,700)	906,990 (1,166,130)	647,850 (906,990)		1일 5시간	1,072,870	965,580	858,290 (1,072,870)	751,000 (965,580)	536,430 (751,000)		1일 4시간	858,290	772,460	686,630 (858,290)	600,800 (772,460)	429,140 (600,800)		1일 3시간	643,720	579,340	514,970 (643,720)	450,600 (579,340)	321,860 (450,600)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90%	80%	80% (80%+20%)	70% (70%+20%)	50% (50%+20%)																																																					
1일 8시간	1,724,850	1,552,360	1,379,880 (1,724,850)	1,207,390 (1,552,360)	862,420 (1,207,390)																																																					
1일 7시간	1,510,270	1,359,240	1,208,210 (1,510,270)	1,057,180 (1,359,240)	755,130 (1,057,180)																																																					
1일 6시간	1,295,700	1,166,130	1,036,560 (1,295,700)	906,990 (1,166,130)	647,850 (906,990)																																																					
1일 5시간	1,072,870	965,580	858,290 (1,072,870)	751,000 (965,580)	536,430 (751,000)																																																					
1일 4시간	858,290	772,460	686,630 (858,290)	600,800 (772,460)	429,140 (600,800)																																																					
1일 3시간	643,720	579,340	514,970 (643,720)	450,600 (579,340)	321,860 (450,600)																																																					
261쪽 3. 지원금 신청																																																										
3-1 지원금 신청방법																																																										
<u>④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u>  <u>○ (제출방법)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u>	<u>④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처음 신청시, 통장 변경시)</u>  <u>○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서면접수 시 차기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u></li> <li>- <u>자치단체는 지원금 지급 전 과정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u></li> </ul>	<u>○ 서류 간소화 및 통합시스템 사용 안내</u>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262쪽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실적보고</p> <p>○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u>발견(제보)</u>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p> <p><u>&lt;신 설&gt;</u></p>	<p>○ -----  <u>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li> <li>-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 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li> <li>-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자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li> <li>-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약정 해지</li> </ul>	<p>○ 지침내용 상세설명</p>
<p><u>&lt;신 설&gt;</u></p>	<p>○ (필수 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확인 및 “내부결재 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p>	<p>○ 통합시스템 사용 안내</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266쪽 2-2 재심사 제외대상  2-2 재심사 제외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 오류수정  ○ 재심사 요건 완화
271쪽 VI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생략 * 생략 - 광역지자체는 총 사업예산의 10%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지원계획 수립 전에 고용관서와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 및 사용예산 협의.조정  - 계획수립 후 고용관서에 제출 및 사후 추진 결과 보고, 고용관서는 내용 검토 후 본부에 결과보고[별지 제16호 서식]  * 지원계획은 지원항목별 예산 내역 등을 명시하여 계획수립	○ 좌동 * 좌동 - 광역지자체는 교부된 사업예산의 최대 20%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지원계획 수립 전에 지역별 사업예산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 이후, 고용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내용 협의.조정 - 계획은 당해연도 1.31.일까지, 추진 실적은 다음년도 1.31.일까지 고용관서에 제출, 고용관서는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내용 검토 후 2.15.일까지 본부에 결과보고[별지 제17호서식] * 지원계획은 지원항목별 예산 내역 등을 명시하여 계획수립	○ 지침 반영 - 사회적기업과-3744(‘17.9.16) ○ 오류 수정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절차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lt;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절차 &gt;</p> <p style="text-align: center;">&lt;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절차 &gt;</p> <pre> graph LR     A[사업예산 협의 (광역↔고용 노동부)] --&gt; B[지원계획 사전 협의 (광역↔고용관서)]     B --&gt; C[지원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C --&gt; D[계획서 시달·통보 (광역→기초, 고용관서)]     D --&gt; E[사업수행 및 지원금 교부 (기초↔참여기업)]     E --&gt; F[추진실적 보고 (광역→고용관서→고용부)] </pre>	
<p>○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목적)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발굴·육성 및 안정적 정착</li> <li>▶ (지원방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li> <li>▶ (지원대상)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li> <li>▶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지원율, 취약계층 고용률 설정, 인센티브 제공 등</li> <li>▶ (예산한도) 당해 사업예산의 10%</li> <li>▶ (지원기간) 당해 회계연도 기준</li> </ul>	<p>○ 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목적)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발굴·육성 및 안정적 정착</li> <li>▶ (지원방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li> <li>▶ (지원대상)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li> <li>▶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지원율, 취약계층 고용률 설정, 인센티브 제공 등</li> <li>▶ (예산한도) 당해 사업예산의 20%</li> <li>▶ (지원기간) 당해 회계연도 기준</li> </ul>	
<p>ex1) ~ ex5) 생략</p> <p>ex6) &lt;신 설&gt;</p> <p>ex7) &lt;신 설&gt;</p>	<p>ex1) ~ ex5) 생략</p> <p>ex6) <u>최대 지원기간(5년) 계속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율 +20%</u></p> <p>ex7) <u>청소·경비 등 용역업종의 경우 경영상 재정악화에 따른 지원</u></p>	
273쪽		
<인용>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인용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인용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285쪽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착안사항 (권고사항)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u>&lt;추 가&gt;</u>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착안사항 (권고사항)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가점)	<input type="radio"/>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288쪽 약정서 제8조(계속지원 결정) 제②항 제2호 지원개시일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참여기업이 제시한 수익 규모(매출액)가 <u>70%</u> 에 미달하는 때	제8조 제②항 제2호 ----- ----- ----- <u>50%</u> -----	<input type="radio"/> 재심사 요건 완화 및 약정서 내용 명확화, 오류수정 등
제12조(제재조치) 제⑨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u>경우에는</u> <u>5배 이내의</u>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제⑨항 ----- ----- <u>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u> ----- ---	
제15조(선정취소) 제4호 사업공고일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제4호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 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294-295쪽 참여제한자 범위 <u>&lt;삭 제&gt;</u>	<u>&lt;삭 제&gt;</u>	<input type="radio"/> 중복으로 삭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301쪽 <서식 제·개정>		
<신 설>	<input type="radio"/> <u>(재참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lt;별첨&gt;</u>	
304-306쪽		
[별지 제5호서식]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의2서식]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u>참여자용</u> ) [별지 제5호의2서식]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u>대표자용</u> )	<input type="radio"/> 대상자 명확화
31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보고서 2. 지원기간 중 사업 실적 ② 사업계획대비 매출액<기준> <u>70%</u>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보고서 2. 지원기간 중 사업 실적 ② 사업계획대비 매출액<기준> <u>50%</u>	<input type="radio"/> 양식 수정
331쪽		
<input type="radio"/>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u>지원약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u>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input type="radio"/>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u>마지막달 지원금 신청시</u>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input type="radio"/> 오류 수정
332쪽 <서식 제·개정>		
<신 설>	<input type="radio"/> <u>배정인원 증원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lt;별첨&gt;</u>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u>&lt;신 설&gt;</u>	<input type="radio"/> <u>배정인원 (증원 · 감원) 조정 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 서식] &lt;별첨&gt;</u>	
<u>&lt;신 설&gt;</u>	<input type="radio"/> <u>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확인 결과 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 &lt;별첨&gt;</u>	

#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창출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 05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354쪽 2-2 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사업신청서 제출 -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 신청서」 <u>제출</u> [ <u>별지제1호서식</u> ], [ <u>별지제2호서식</u> ]	<input checked="" type="radio"/> 사업신청서 제출 -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u>별지제1호서식</u> ], [ <u>별지제2호서식</u> ], [ <u>별지제7호의2서식</u> ]	<input checked="" type="radio"/> 내용 추가
357쪽 3-2 참여제한자의 범위		
3-2 참여제한자의 범위 <input checked="" type="radio"/>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u>&lt;추 가&gt;</u>	<input checked="" type="radio"/> ----- ----- ----- ----- - <u>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u> - <u>사업장 소재지,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채용, 급여지급 등), 노무관리(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 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 이윤 배분 등), 모</u>	<input checked="" type="radio"/> 지침 내용 상세설명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u>법인 여부, 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u>	
365쪽 지원기간 적용방법		
* 예시 : 일자리창출 '16.6.1. / 전문인력 , 16.8.1 / 사업개발비 '16.10.1 → 최초 지원 개시일은 <u>'15.6.1임</u>	* 예시 : 일자리창출 '16.6.1. / 전문인력 , 16.8.1 / 사업개발비 '16.10.1 → 최초 지원 개시일은 <u>'16.6.1임</u>	○ 오류 수정
366쪽 2. 지원금 신청 및 관리		
2-1 지원금 신청방법		
③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 (제출방법)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	③ <u>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u>  ○ <u>(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면접수 불가)</u>	○ 서류 간소화 및 통합시스템 사용 안내
367쪽 지원금 지급방법 및 관리		
* 사업참여중에 새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참여중에 새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u>사업자 등록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u>	○ 질의회시 반영 - 사회적기업과-2115(2016.6.28)
368쪽 지원금 지급방법 및 관리		
○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	○ -----	○ 지침내용 상세설명 및 통합시스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정수급 정황이 <u>발견(제보)되어</u> 조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p> <p><u>&lt;추 가&gt;</u></p>	<p>-----<u>발견(제보, 수사 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u></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u></li> <li>- <u>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u></li> <li>- <u>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자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u></li> <li>- <u>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약정해지</u></li> <li>○ <u>(필수 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확인 및 “내부 결재 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u></li> </ul>	사용 안내
<p><u>&lt;신 설&gt;</u></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369쪽 약정서 제11조(제재조치) 제⑨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u>경우에</u> 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제⑨항 ----- -----경우에----- 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 --	○ 내용 명확화
제14조(선정취소) 제4호 <u>사업신청일</u>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제4호 <u>사업신청일이</u>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 내용 명확화(오류 수정)
375-376쪽 참여제한자의 범위		
<삭제>		○ 중복으로 삭제
377쪽 별표 2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경력요건 200만원 한도 ① 경영,회계, 마케팅, 능력개발,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경력요건 200만원 한도 ① <u>채용일 이전</u> ----- ----- ----- -----	○ 지침내용 반영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p> <p>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 원 확인사항)</p> <p><u>&lt;추 가&gt;</u></p>	<p>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p> <p>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 원 확인사항)</p> <p><u>3.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u></p>	

## 2018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 07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88쪽 3.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		
<p>3.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p> <p>지원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li> </ul> <p>*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u>산재보험 (0.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li> </ul> <p>* '1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u>6,470원</u>, 월평균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li> <li>○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u>126,560원</u></li> </ul> <p>- 고용보험은 1인당 월 <u>12,170원</u>(÷6,470원 * 209 시간 * 0.9%)</p> <p>- 산재보험은 1인당 월 <u>9,460원</u>(÷6,470원 * 209</p>	<p>3.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p> <p>지원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li> </ul> <p>*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u>산재보험 (0.85%)</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li> </ul> <p>* '18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u>7,530원</u>, 월평균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li> <li>○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u>151,080원</u></li> </ul> <p>--고용보험은 1인당 월 <u>14,160원</u>(÷7,530원 * 209 시간 * 0.9%)</p> <p>--산재보험은 1인당 월 <u>13,380원</u>(÷7,530원 * 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수준 반영</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u>시간 * 0.7%)</u></p> <p>-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4,080원(÷6,470원 * 209 <u>시간 * 3.26%)</u></p> <p>- 국민연금은 1인당 월 60,850원(÷6,470원 * 209 <u>시간 * 4.5%)</u></p> <p>*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53,54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65,71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14,390원)만 지원</p> <p>단가산정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은 0.9%[실업급여 0.65 + 능력개발·고용안정 0.25]</li> <li>▶ <u>산재보험은 0.7%</u>[최저요율 적용 (전문기술서비스업)]</li> <li>▶ <u>건강보험은 3.26%</u>[건강보험 3.06 + 노인요양 0.2] * 노인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6.55%</li> <li>▶ 국민연금은 4.5%</li> </ul>	<p><u>시간 * 0.85%)</u></p> <p>- 건강보험은 1인당 월 52,720원(÷7,530원 * 209 <u>시간 * 3.35%)</u></p> <p>-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0,820원(÷7,530원 * 209 <u>시간 * 4.5%)</u></p> <p>*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66,10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80,26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36,920원)만 지원</p> <p>단가산정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은 0.9%[실업급여 0.65 + 능력개발·고용안정 0.25]</li> <li>▶ <u>산재보험은 0.85%</u>[최저요율 적용 (전문기술서비스업)]</li> <li>▶ <u>건강보험은 3.35%</u>[건강보험 3.12 + 노인요양 0.23] * 노인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7.38%</li> <li>▶ 국민연금은 4.5%</li> </ul>	
490쪽 4. 지원금 신청		
2-1 지원금 신청방법		
③ 지원금수령통장 사본 1부	③ 지원금수령통장 사본 1부( <u>처음 신청시, 통장변경시</u> )	○ 서류 간소화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492쪽 5. 지원금 지급방법		
<p>5-2 확인사항</p> <p>② 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p> <p>-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u>시급 6,470원, 일급 51,760원</u>)</p>	<p>5-2 확인사항</p> <p>② 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p> <p>-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u>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u>)</p>	<input type="radio"/> 최저임금 반영

# 2018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input type="checkbox"/> 06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06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칭함
I. 총칙		
1. 목적	<p>○ 본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한 재정지원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u>&lt;신 설&gt;</u></p>	<p>○ -----사회적경제기업의----- ----- ----- ----- 규정 하기 위함</p> <p>※ 용어의 정의: 본 업무지침의 ‘6.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p> <p>-</p> <p>○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p> <p>○ (이하 현행과 같음)</p>
2. 추진근거	<p><u>&lt;신 설&gt;</u></p> <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경영</p>	<p>○ 근거법령은 ‘2. 추진근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18년 지원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p> <p>○(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칭하는 근거를 마련</p> <p>○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규정</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li> <li>○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li> <li>○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li> </ul>		
3. 시행시기: 2017년 1월	3. 시행시기: 2018년 1월	
<b>II. 사업추진체계</b>		
<b>2. 운영주체별 역할</b>		
<p>2-3. 권역별지원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발비 신청기업 상담 및 지원</li> <li>○ <u>&lt;신 설&gt;</u></li> </ul>	<p>(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사업개발비 신청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검토</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하도록 함</li> </ul>
<b>III.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b>		
<b>1. 참여기업 선정</b>		
<p>1-1. 참여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li> <li><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li> <li>○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li> </ul>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처형 예비사회적기업”</p> <p>○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input type="checkbox"/>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p> <p><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p>	
<p>1-2. 참여제외 대상</p> <p>○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p> <p>○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u>사업개발비</u>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p> <p>○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p> <p>○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p> <p>○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p>	<p>(현행과 같음)</p> <p>○ ----- <u>사업에</u> ----- ----- -----</p> <p>(이하 현행과 같음)</p>	<p>○ 사업에 대해 지원하므로 문구 명확화</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2. 사업참여기업 공모, 신청·접수		
2-1. 모집방법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업개발비 <u>참여기업을</u>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  ○----- <u>지원사업 참여기업을</u> ----- ----- ----- -----	○ 사업명칭 명확화
2-3.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 <a href="http://www.seis.or.kr">www.seis.or.kr</a> )을 통해 신청  <u>&lt;신 설&gt;</u>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u>&lt;신 설&gt;</u>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현행과 같음)  - <u>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u>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 (해당 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현행 ②와 같음) ④ (현행 ③과 같음)	○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  ○ 확대되는 지원대상 기업(조합) 규정  ○ 중복지원 방지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④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⑤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 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p> <p>⑦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p> <p>⑧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p> <p>⑨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서류</p>	<p>⑤ (현행 ④와 같음)</p> <p>⑥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 (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p> <p>⑦ ----- <u>경영컨설팅</u> -----(-----)</p> <p>⑧ (현행 ⑦과 같음)</p> <p>⑨ (현행 ⑧과 같음)</p> <p>⑩ (현행 ⑨와 같음)</p>	
3. 사업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3-1. 위원 구성·운영		
<p>○(전문심사위원회)</p> <p>- 전문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이 구성·관리하는 권역별 전문 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u>4인 이상</u> 포함하여 야 한다(추천 민간전문가 중 <u>2인 이상은</u> 타</p>	<p>○ ----- - ----- ----- ----- 5명 이상 ----- ----- (----- <u>한국사회적기</u></p>	<p>○ 진흥원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시·도에 거주할 것)	업진홍원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해야 하고, 2명은 타·시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3. 심사 항목의 구성 <input type="radio"/> 사업계획의 적정성(50) <input type="radio"/> 신청금액의 적절성(20) <input type="radio"/> 사업수행 능력(20) <input type="radio"/> 사회공헌 실적(10) - <u>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u>	<input type="radio"/> 사업계획의 적정성(40)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사회적 가치(20) - <u>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u>	<input type="radio"/> 사회적 가치 비중을 늘림에 따라 축소 <input type="radio"/>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공통기준을 적용함
4. 사용불가 항목		
<input type="radio"/>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u>* &lt;신 설&gt;</u>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30%)를 자본보조 (330-03)로 편성 또는 전용할 경우 지방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u>	<input type="radio"/> 지방비 예산으로 자본재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선정결과 보고 및 게시		
<input type="radio"/> 선정결과	<input type="radio"/> 선정결과	<input type="radio"/> 해당없는 내용 삭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	기업 유형	신청 유형	사업비 합계	보조금(천원)			~	~	기업 유형	<삭제>	사업비 합계	보조금(천원)			~	
				보조금 총액	국고 보조금	자치단체 보조금						보조금 총액	국고 보조금	자치단체 보조금		
~							~	~							~	
<b>V. 주요 사업내용</b>																
<b>1. 지원기간 및 한도</b>																
<p>○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u>예비사회적기업</u> 5천만원 이내</p> <p>○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고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마을기업 운영 시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p>							<p>○ -----, <u>예비사회적기업</u>,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p> <p>○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p>							<p>○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p>		
지원기간 적용방법							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 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p>○ &lt;삭제&gt; (표안으로 이동)</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 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 초 지원개시일로부 터 5년이내 최대지 원기간은 4년	최대지원 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li> <li>* 예시: 일자리창출 '16.6.1./ 전문인력 '16.8.1/ 사업개발비 '16.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16.6.1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16.6.1./ 전문인력 '16.8.1/ 사업개발비 '16.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16.6.1임</li> <li>○ 다만 '1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 제&gt; (표안으로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u>인증지정기간</u>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u>사회적경제기업</u>으로서 자격이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종료 조건 마련</li> </ul>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p> <p>○(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u>(예비)사회적 기업들이</u>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p>	<p>○ ----- <u>사회적경제 기업들이</u> -----</p> <p>-----</p> <p>-----</p>	<p>○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 기업 지원 근거 마련</p>
<p>2.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지원요령</p>		
<p>○(목적)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p>	<p>○(목적) <u>사회적경제기업</u> -----</p> <p>-----</p>	<p>○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 기업 지원 근거 마련</p>
<p>○(기본 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u>(예비) 사회적기업</u> <u>의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u>를 구성</p>	<p>○(기본 요건) -----</p> <p>----- <u>사회적경제기업</u></p> <p><u>의</u> -----</p>	
<p>○(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u>(예비)사회적기업</u>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p>	<p>○(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p> <p>-----</p> <p>----- <u>사회적경제기업</u> -----</p> <p>-----</p>	
<p>○(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p>	<p>○(신청) -----</p> <p>-----</p>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치 단체에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적경제기업을 -----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u>(예비)사회적기업과</u>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약정체결) ----- ----- <u>사회적경제기업과</u> ----- -----	
[별표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제목 <u>(예비)사회적기업</u>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연 차 _년, 회차 _회차)	<u>사회적경제기업</u> -----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용어 변경
제2조(지원내용) “사업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 <u>(예비)사회적기업</u>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 한다.	제2조(지원내용) ----- <u>사회적경제기업</u> ----- -----. -----.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사업참여기업”은 <u>(예비) 사회적기업</u>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 <u>사회적 경제기업</u> ----- ----- ----- .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p>② (생 략)</p> <p>1)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p> <p>2) (생 략)</p> <p>3)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p> <p>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u>(예비)사회적기업</u>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 「<u>사회적경제기업</u>」----- -----. -----.</p> <p>2) (생 략)</p> <p>3) ----- 「<u>사회적경제기업</u>」----- -----. -----. -----.</p> <p>③ ----- <u>사회적</u> <u>경제기업</u>----- -----. -----.</p>	
제9조(회계관리) ①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리) ① ----- 「 <u>사회적경제</u> <u>기업</u> 」----- -----.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 ----- 「 <u>사회적경제기업</u> 」----- -----. -----. -----.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위탁하여 “사업참여기업”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	
제14조(선정취소) (생 략)  2. <u>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u>	제14조(선정취소) (현행과 같음)  2. <u>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인증, 지정, 인가 또는 인정 취소된 경우</u>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선정취소 근거 마련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사업참여기업”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u>(예비)사회적기업</u> 사업개발비 실적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 ----- <u>사회</u> <u>적경제기업</u> ----- -----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을 “사회적경제기업”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제1호와 제2호의 본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사업에” 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u>&lt;신 설&gt;</u>	별첨과 같이 한다. 별첨과 같이 “사회적 가치 심사표”를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붙임 일반사항 제2호의 “사회적 기업육성”을 “사회적경제기업육성”으로 한다.	